



산업정책



1. 2011 세법개정안 무엇을 담았나
2. 계열사간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확대
3. [알면 보이는 中企지원] 소상공인 지원자금
4. 中企 종합포털, 비즈인포 모바일 웹사이트 오픈
5. 중기청, '업종 공통기술 개발사업' 17개 과제 지원
6. 중기청, 2012년 중소기업 예산 6조 1,629억원
7.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감축목표는?
8. 무단방치차 등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실시
9. 자동차검사 안내서비스 스마트화
10. "임투공제 → 고용창출 공제로 전환 ...고용 늘려야 법인세 인하"
11. 추가감세 철회...일자리 늘리는 기업엔 稅혜택 강화
12.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세 물린다"
13.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1/3 지원...2,000억 규모 청년창업자금 신설"
14. "대학등록금 22% 부담 경감...만 5세아 전면 무상보육"
15. "SOC, 22.2조원 투자...中企 정책자금 3.4조로 확대"
16. "전자수입인지" 도입 추진...수입인지 인터넷으로 구매
17. "신용카드 포인트로 국세 납부하세요"
18.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 간소화

1. 2011 세법개정안 무엇을 담았나

"고용 늘려야 세제혜택 받는다"

앞으로 기업이 투자를 하더라도 고용 증가가 없으면 세제혜택을 받기 어려워진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은 3년간 근로소득세를 면제받고,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도 2년간 사회보험료를 감면받는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가업을 쉽게 이어갈 수 있도록 가업상속 공제율이 확대되고, 편법적인 상속·증여를 막기 위해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공생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2011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정치권과 재계의 관심을 모아온 법인세 추가감세 문제는 결국 과세표준 구간을 하나 더 신설하고 추가감세 내용도 담은 절충안으로 해결됐다.

즉, 과표 2억원 초과 구간을 2억~500억원 이하 및 500억원 초과 구간으로 세분하고, 중소·중견기업들이 주로 적용받는 2억~500억원 이하 구간은 예정대로 세율을 20%로 인하하기로 했다. 반면 500억원 초과 구간은 현행 22% 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법인세와 함께 관심을 모았던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대로 35%를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투자금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임시투자 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일 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해 세금을 지원하는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가 도입된다. 대신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해 전년대비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3~4%를 기본 공제하고, 고용증가인원 비례에 따라 2%를 추가 공제하기로 했다.

2013년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는 3년간 근로소득세를 면제하고,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에게는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2년간 세액 공제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중소기업이 쉽게 가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확대했다. 100억원 이내서 상속재산의 4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그 범위가 500억원 이내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다만 가업을 상속받은 후 10년간 고용량이 1.0배(중견기업은 1.2배) 이상을 유지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서민·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혜택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를 확대해 내년부터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더라도 배우자만 있으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총소득기준 및 최대 지급금액도 늘어나, 기존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합계 1,700만원 미만 가정에 최대 연 12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부양자녀 수에 따라 최대 18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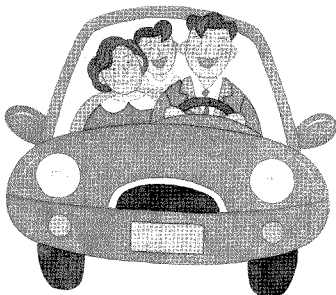
정부는 이번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로 금로장려금 혜택을 받는 가구가 올해 52만 가구에서 내

년엔 80여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소득공제 한도(추가 100만원) 및 소득공제율(30%)을 인상하고,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체크·선불카드 사용분 공제율을 기존의 25%에서 30%로 확대했다.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방만한 비과세 및 감면제 정비에도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일감을 받은 법인의 사업연도별 매출거래 중 특수관계 법인과 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한 경우 내년부터 증여세를 물리기로 했다. 과세대상자는 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지분을 3% 이상 보유한 대주주 개인이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2015년까지 3조 5,000억 원 가량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집계했다. 근로장려 세제가 확대되면서 2,000억원 가량이 감소 요인이지만,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약 3조원 등이 증가 요인으로 작용해 전체적으로 세수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2. 계열사간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확대

이르면 오는 12월말부터 연간 계열사와의 거래금액이 매출액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일 경우 기업집단은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거래내역 등을 공시하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기업집단내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기업집단 현황공시 대상은 연간 계열사와의 거래금액이 연 매출액의 10% 이상이며 상장사의 경우엔 자본총계 혹은 자본금의 10% 이상 혹은 100억원 이상인 경우다.

개정안은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이 되는 계열사간 대규모 내부거래 범위도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대상기업도 동일인 및 친족의 지분이 20% 이상을 소유하는 계열회사로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인 내부거래와 동일인 및 친족의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회사에 대해서만 공시하면 됐다.

개정안은 또 대규모 회사들이 주식취득 방식을 통해 결합할 경우 현재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바뀌,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을 야기할 수 있는 국내 및 글로벌 기업들의 결합에 효율적,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개정안은 수차례 담합

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담합사실을 자진신고 할 경우 과징금 등의 감면혜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상습법위반 사업자가 감면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3. [일면보이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자금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접수”

중소기업청이 하반기 소상공인 자금지원에 나선다. 중기청은 지난 4일부터 각 지역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 ‘2011년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소상공인의 창업을 촉진하고 골목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의 시설현대화 등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올 하반기 소상공인 자금은 약 1천 40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우선 재해복구자금과 물가안정 대책자금 등으로 구성된 ‘우선지원자금’에 996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내수진작을 통한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별도의 자금을 증액해 이달중 행정안전부의 지정결과 발표 직후부터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또 나들가게 점포 확장을 위한 ‘나들가게 자금’과 창업지원 등에 사용되는 ‘정책목적자금’에는 각각 380억원, 33억원이 배정됐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시중은행을 통해 지원되며 재해자금 등의 경우 제출서류 및 심사를 간소화 하는 등 최대한 신속히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복구 자금 확충에 중점을 뒀다”며 “제출서류 및 심사 간소화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히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금신청·상담은 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에서 자금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보증기관을 거쳐 18개 대출은행으로부터 대출집행 절차로 이뤄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기청 및 소상공인진흥원(042-363-7751)에 문의하면 된다.

4. 中企 종합포털, 비즈니스포 모바일 웹사이트 오픈

2008년 1인 기업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2009년 1인 창조기업 성공포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PNI Korea 대표(강진욱)는 8시에 사무실을 출근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를 체크하고, 직원들과 티타임을 갖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특히 하루 일과 중에 중요한 부분은 Bizinfo(중소기업정책정보시스템, www.bizinfo.go.kr)를 검색하는데 이는 정부·공공기관 등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사업, 행사 등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창업 후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발생하는 운영자금 부족을 꼽았다.” 사업초기 어려움은 중소기업 지원정보가 한 곳에 모인 Bizinfo에서 해결하였다고 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청에서 주최하는 1인창조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그 해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을 수상하여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단기간에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강진욱 대표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해결해야 하는 경영애로가 많은데, Bizinfo는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마련한 중소기업 지원내용을 실시간으로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전화 1통으로 애로사항 해결까지 해주니 중소기업에게는 정말 요긴한 포털사이트라고 말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지원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는 “모바일 웹사이트(m.bizinfo.go.kr)” 오픈한다고 23일 밝혔다.

모바일 웹사이트는 지원 분야별 카테고리를 별도로 구성하여 중소기업 지원정보와 함께 경영애로 상담까지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 주소(http://m.bizinfo.go.kr)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모

바일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Bizinfo는 '09년 3월 중소기업 정책정보 제공 기능과 함께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상담까지 지원하는 종합포털사이트(Bizinfo)로 개편한 이래 접속 건수가 2011. 9월 현재 총 820만 건을 넘어섰으며 올해도 260만건을 돌파했다.

〈Bizinfo 접속자 수〉

(단위: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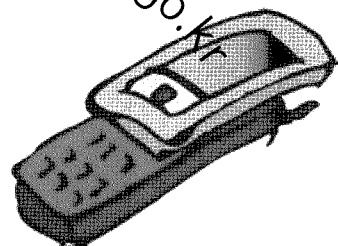
구분	2009	2010	2011.9	총계
Bizinfo	2,553,687	3,033,499	2,620,597	8,207,783

※ 2011.9.21기준

Bizinfo는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에 흩어져 있어 중소기업 지원사업·경영·행사정보를 한 곳에 모아 실시간으로 알기 쉽게 제공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포털사이트이다.

현재 정부, 지자체 등 39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정책, 경영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제공하고 있으며, 올해에만 지원정보가 8천건을 넘어섰다

www.Bizinfo.go.kr



〈지원기관 및 제공정보 현황〉

년도	지원사업정보제공기관(개)					제공정보 현황(건)			
	계	정부 부처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	유관 기관	계	정책 정보	경영 정보	행사 정보
2009	270	15	16	13	226	9779	1782	4821	3176
2010	363	30	16	4	313	8013	2658	2642	2713
2011. 9	390	44	16	4	326	8186	2773	3215	2198

문의 : 고객정보화담당관실 이재천 (042-481-4592)

5. 중기청, '업종 공통기술 개발사업' 17개 과제 지원

중소기업청은 조합의 공통애로기술을 지원하는 '업종 공통기술개발사업'을 통해 17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이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함께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업종별 단체인 협동조합이 회원사가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제품·공정 등을 발굴·개발하고, 기술개발 결과물은 동종 및 유사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보급 확산함으로써 중소기업의 R&D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선정된 과제는 평균 1억 6천만원씩 지원되며, 개발 기간은 1년이다.

선정된 과제를 살펴보면, 대구경북패션칼라조합의 '염색공정에서 발생한 폐수 중 고온수를 회수하여 염색가공에 재활용' 하는 과제는 섬유염색 중소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원가절감뿐 아니라 폐수 재활용으로 섬유염색산업의 친환경적 이미지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의 '광 아크센서 디바이스' 과제는 개폐장치에서 단락 시 발생하는 섬광을 광 섬유 센서를 이용하여 짧은 시간에 감지·차단하는 기술로 화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개발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전기제품의 생산이 예상된다.

인천경기기계공업협동조합은 수입에 의존했던 '중대형 BLDC(Brushless DC) 모터를 국산화' 하는 과제로 개발 시 송풍기 등을 생산하는 기업의 원가절감 뿐 아니라 수입대체 효과도 기대되며,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의 '바이패스 전원 회로를 갖는 고 신뢰도 LED' 개발과제는 기존 LED의 일부 전구 불량률이 전체 전구에 영향을 주는 단점을 보완하는 과제로서 긴 수명을 갖는 LED 조명기구가 시장에 선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중앙회 유옥현 팀장은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기술을 조합을 통해 통합 개발함으로써 업종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향상 될 것이다."라고 말했으며,

중소기업청의 조규중 과장은 "조합은 회원사와의 긴밀한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회원사가 필요로 하

는 공통애로기술에 대해 잘 알고 있어, 동 사업이 중소기업 R&D 중간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는 물론 업종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며,

“내년에는 조합의 다양한 공통애로기술 지원을 위해 참여대상 및 과제별 사업비 확대 등을 통해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 공통기술개발사업 선정과제 현황)

조합 형태	조합명	과제명
지방 조합	경기북부 한편협동조합	연사-편직의 일체화 공정을 통한 복합사 원단의 생산기술 개발
지방 조합	경남직물 공업협동조합	실크생사 사가공을 통한 구김 회복성이 우수한 한복지 개발
지방 조합	대구경북금형 공업협동조합	전자버튼식 자동변속기 레버 제작용 초정밀 금형의 5축 가공기술 개발
지방 조합	대구경북패션칼라 산업협동조합	선택적 폐열 회수를 이용한 에너지 절감형 섬유염색 공정기술 개발
지방 조합	대전충남인쇄 정보산업협동조합	NIR을 이용한 초고속 인쇄건조시스템
지방 조합	인천경기기계 공업협동조합	송풍기 전용 고효율 대용량 직결형 BLDC 모터 개발
지방 조합	전남직물 공업협동조합	친환경 직물을 이용한 어린이용 루프 타월 개발
전국 조합	한국공간정보 산업협동조합	다목적 공간영상정보 제작을 위한 S/W 개발
전국 조합	한국과학기기 공업협동조합	과학 교육용 인터랙티브 3D 뷰어 플랫폼 구축을 위한 3D 가시화 소프트웨어 개발
전국 조합	한국의료기기 공업협동조합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지원 시스템 개발

전국 조합	한국자동제어 공업협동조합	친환경 건물 구축용 에너지 저감 모니터링 및 솔루션 개발
전국 조합	한국전기 공업협동조합	광 아르센서 디바이스
전국 조합	한국전등기구 공업협동조합	인간중심조명의 빛환경 최적화를 위한 표준보급형 LED조명 기구 개발
전국 조합	한국전자 공업협동조합	친환경 전자부품 모듈의 전자 기내성 설계 대책 공통기술 개발
전국 조합	한국조명 공업협동조합	바이패스 전원회로를 갖는 고 신뢰도의 LED 광원 개발
전국 조합	한국진동전압 콘크리트 공업협동조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대형맨홀 및 펌프장 맨홀 생산기술 개발
사업 조합	한국한방 사업협동조합	한약재료 맥문동 거심가공 공정 자동화 시스템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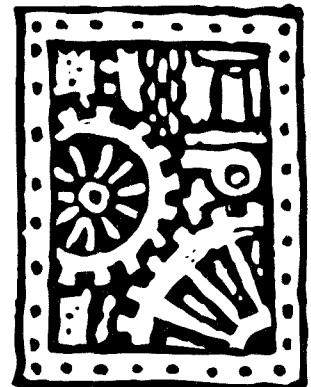
(순서 : 조합 가나다 순)

문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서종필

(042-481-4442),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팀 조동석

(02-2124-3103)



6. 중기청, 2012년 중소기업 예산 6조 1,629억원

중소기업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3.1% 증가한 6조 1,629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총지출

('11) 5조 9,762억원 → (' 12) 6조 1,629억원 (3.1% 증)

'11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창업투자보조금)과 중소기업 지원과 직접관련이 없는 차입금 상환액 등 자연감소분을 감안할 경우 실제 중소기업 지원예산은 약 6.5%(3,891억원) 증가했다.

자연 감소분

- '11년 종료사업 : 창투보조금(△518억원)
- 의무지출 감소 : ADB/IBRD차입금 상환(△885억원), 차입금 이자상환(△621억원)

내년도 예산안은 청년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의 미래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R&D 확대,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자생력 확보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

청년창업 일자리 창출

('11) 1,916억원 → (' 12) 4,165억원(117.4% 증)

미래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R&D 지원

('11) 6,288억원 → (' 12) 7,150억원(13.7% 증)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 안정지원

('11) 7,077억원 → (' 12) 7,536억원(6.5% 증)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청년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특성화 고졸 취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11) 1,916억원 → (' 12) 4,165억원(117.4% 증)

〈청년창업 주요 프로그램〉

▣ 청년창업 전용자금 신설(1,300억원) :

청년층의 아이디어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창업자금과 별도 운용하고 민간금융과 1:1 매칭 운용 - 창업실패시 융자상환금 일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추진

▣ 청년창업 엔젤투자펀드 신설(700억원) :

개인 투자자의 청년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해 민간 참여(100억원) 펀드를 조성(800억원)하고 엔젤 투자자와 1:1매칭으로 1,600억원 투자규모 조성

▣ 청년창업자금 연계 컨설팅 지원 신설(67억원) :

청년창업자금 지원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여 예비창업자의 창업비용 절감 및 창업 성공률 제고

▣ 창업 맞춤형 사업화지원 신설(350억원) :

기존 창업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청년창업사관학교 등)을 수요자가 선택토록 하여 창업성공률 제고

〈고졸자 취업 제고 등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 특성화고 육성(140→168억원) :
산업현장에 맞는 기능인력 양성교육 지원을 '11년 66개교에서 '12년 80개 학교로 확대

▣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72→101억원) :
중소기업과 특성화고 학생간 1:1 채용 협약 후 기업에 맞는 인력양성 지원을 '11년 66개교에서 '12년 94개교로 확대

▣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30→56억원) :
고졸자 취업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말·야간 학위과정 지원을 '11년 500명에서 '12년 1,000명으로 확대

둘째, 중소기업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8개 사업 7,150억원을 투입한다.
('11) 6,288억원 → ('12) 7,150억원(13.7% 증)

▣ 융복합기술개발지원(234→399억원) :
기술제품의 융복합화 추세에 맞추어 농공상 융합, 융복합지원센터 연계 등 체계적인 융복합연구개발 촉진

▣ 상용화기술개발(900→1,110억원) :
정부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함께 지원하는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 및 대기업이 구매를 전제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지원 확대로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확산 유도

▣ 창업성장기술개발(950→1,136억원) :
창업초기기업 전용 R&D로서 기술창업자의 사업화를 촉진하여 일자리 창출 유도

▣ 산학연협력 기술개발(1,197→1,322억원) :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인력 및 장비를 활용한 기술개발과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셋째,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자생력 확보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에 주력한다.
('11) 7,077억원 → ('12) 7,536억원(6.5% 증)

▣ 나들가게(현대식 점포) 육성지원(215→401억원) :
현대식 골목슈퍼를 '12년까지 1만개를 지원('12년 4,700개)하기 위한 예산 반영

▣ 시장경영 혁신지원(411→483억원) :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 규모('11, 1,300억원→'12, 2,000억원) 확대와 특성화된 시장 육성('14곳)을 위해 예산 확대 반영

▣ 소공인 특화지원(10억원, 신규) :
소상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소공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실태조사·분석비용 반영

▣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용자)(4,000→4,250억원)과 지역신보 재보증 지원(200→300억원) 확대



넷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공급 확대와 판로촉진을 지원한다.

(' 11) 1조 200억원 → (' 12) 1조 1,300억원(10.8%)

▣ 매출채권보험 출연(180→250억원) :

어음부도에 의한 연쇄도산 방지와 신용거래 활성화 촉진을 위해 보험 인수규모 확대
(11, 6.2조→12, 6.8조)

▣ 대내외 여건변화로 겪는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긴급경영 안정자금(2,200→2,500억원) 및 녹색, 첨단융합 등 성장유망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신성장 기반자금(7,820→8,550억원) 확대

▣ 중소기업 특특매장 설치(16억원, 신규) :

신기술, 신아이디어 제품에 대한 판로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

▣ MRO지원센터(10억원, 신규) : 중소 소모성 자재납품업 활동지원을 위해 정보제공, 시장조사 등 지원활동 소요비용 반영

▣ 중소기업청은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확정 되는대로 '12년도 사업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각종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담당관실 권순목(042-481-4362)

7.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감축목표는?

정부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을 위해 450여개 관리업체들의 내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를 확정하고 10.10일자로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하고, 업체별로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그 이행여부를 직접 관리하는 제도이다.

관리업체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2/3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감축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관리에 나서는 것은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이라 할 수 있으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업체는 정부의 개선명령을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작년부터 제도 시행을 위하여 관리업체를 지정하고 운영지침을 고시하였으며, 금년 6월에는 관리업체들로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명세서 제출받은 후 감축목표를 설정하게 되었다.

이번 관리목표는 ① 관장기관-관리업체의 목표 협의 ② 국가 온실가스 정책협의회 ③ 부문별 목표설정협의회를 거쳐 확정되었다.

관리업체들의 2012년 예상 배출량은 606백만톤 CO₂이며, 여기에 정부가 정한 감축계수를 적용한

결과 총 배출허용량은 1.44%가 감축된 598백만톤 CO₂가 되었다.

부문별로 감축량을 살펴보면 산업·발전 8,325천톤(전체 감축량의 95.4%), 폐기물 254천톤(2.9%), 건물·교통 124천톤(1.4%), 농림식품 24천톤(0.3%)의 순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함께 설정한 에너지 절약목표는 2012년 예상사용량 7,596천TJ에서 109천TJ(2,607천toe)을 절감한 7,487천TJ로 설정되었습니다(*1TJ=23.88toe / toe(석유환산톤)).

한편, 정부는 향후 더욱 공정하고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하여 지난 10.5일 열린 ‘국가 온실가스 정책협의회’를 통해 「관리업체 목표 사후관리 추진 방안」을 확정하고 이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업체들의 예상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이의 신청기간 중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2013년도 목표설정부터는 매년 6월말까지 업종별 배출허용량(안)을 확정하는 후 업체별로 예상배출량 협의를 진행하는 절차를 통해 다음해 감축수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목표관리제 시행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이 본격화되는 동시에 온실가스·에너지와 관련된 기술·산업의 성장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도의 시행 첫해인 내년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목표를 설정하였다 고 설명하고, 관리업체의 목표 이행을 지원하기 위

하여 컨설팅 및 기술진단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실제와 달리 과도하게 예상배출량을 제시한 기업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사후관리를 하여 추가적 노력 없이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무임승차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8. 무단방치 등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실시

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 변경 자동차에 대하여 10월 한달동안 각 시·도지사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燈)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燈)·방향지시등(燈) 등을 사용하는 불법 구조 변경 자동차 등의 범규

위반자동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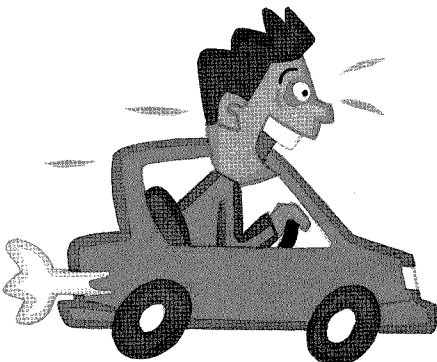
(무단방치 자동차) 방치자동차를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며,

-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처리한 경우 20만원을 부과하고,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한다.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자동차 소유자들이 임의로 구조 변경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등 단속과 함께 계도활동도 함께 펼쳐 나갈 예정이며,

-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구조변경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처벌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일제 정리 기간 동안 시·군·구 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토록 하였으며 검찰청, 경찰청, 교



통안전공단 등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주민들에게 주변에서 방치된 자동차 등을 발견할 경우 시·군·구청 교통관련과로 신고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로 하였다.

지난해의 경우,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무단방치차량 46,650대, 불법구조변경차량 13,193대, 무등록자동차 10,184대, 정기검사 미필이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200,716대, 불법명의 자동차 2,877대,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8,827대 등을 단속·처리한 바 있다.

9. 자동차검사 안내서비스 스마트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들이 자동차 검사 일자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최고 30만원)를 납부해야 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자동차 검사안내를 일반우편으로 안내하였으나, 2011.10.4일부터는 유선전화, SMS 및 E-mail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통계에 따르면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못해 1년 평균 약 200억원(50만건)에 달하는

검사경과 과태료가 납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차검사안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에 등록사무(신규, 이전 및 변경등록) 신청 시 전화번호, 핸드폰 및 이메일을 기재하여 신청하시거나,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에서 신청 하면 된다.

자동차 검사는 교통사고 예방, 환경오염 감소효과가 있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검사안내는 각 시·군·구청, 가까운 자동차검사정비업체 또는 교통안전공단으로 전화하면 상세한 안내를 제공받을 수 있다.

10. "임투공제→고용창출공제로 전환 ...고용 늘려야 법인세 인하"

中企 취업 청년 근로소득세 3년간 면제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일자리를 늘려야 법인세 감면 효과가 큰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로 전면 개편된다. 예전엔 기업 투자의 일정액을 감면받았다면 앞으로는 고용 증가가 있는 투자를 해야만 최대 6%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은 3년간 근로소득세를 면제받고, 이를 받아줘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은 신규 직원의 사회보험료를 세금에서 감면받게 된다.

아울러 기업이 마이스터고 재학생들의 훈련수당 등으로 지출한 비용의 최대 25%를 세금에서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고용 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11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를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기로 했다. 즉, 기업이 일자리를 늘린 만큼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과 청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고용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이 투자해서 고용을 늘리면, 근로자 1명당 1,000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청년층은 1,500만원,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졸업생을 채용하면 2,000만원까지 공제한도가 올라간다.

특히 마이스터고 등과 취업계약을 맺은 기업이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등에 대해서도 연구개발(R&D) 비용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심각한 청년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청년 취업자 모두를 아우르는 '윈-윈' 방안도 내놨다.

2013년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15~29세 청년에게는 취업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100% 면제한다. 군복무기간을 가산해 적용연령도 35세까지 확대했다.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선 신규고용으로 인해 드는 사회보험료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 단, 청년 근로자 증가로 인한 보험료 증가분은 전액 공제하고, 청년 이외의 근로자 증가에 대한 보험료 증가분은 50%만 공제하기로 했다.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도 고용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중소기업 등이 쉽게 가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확대했다. 현재는 100억원 이내에서 상속 재산의 4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그 범위가 500억원 이내에서 상속재산의 100%까지 확대된다. 다만 가업을 상속받은 후 10년간 고용량이 1.0배(중견기업은 1.2배)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산·학·연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과 연구소가 출자해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세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따라서 창업투자회사 등이 직접 또는 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하게 주식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창업투자조합등에 출자한 개인투자자들의 원활한 투자자금 회수 및 재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출자지분 등의 의무보유기간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또 제조업, 연구개발업 등 39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5~30%의 세액감면 혜택을 주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의 적용기간을 오는 2014년말까지 3년간 연장해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반면 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가운데 자동 분쇄·절단·조립시설 등 고용을 대체하는 자동화시설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투자를 하더라도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대기업에 대한 공장자동화기기 수입 관세감면도 지난 2007년 세계개편안 계획대로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현행 감면율(30%)은 유지된다.

11. 추가감세 철회...일자리 늘리는 기업엔 稅혜택 강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전면 전환
...근로장려세제 확대

일감 몰아주기에 과세·
中企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2015년까지 세수효과
약 3조 5,000억원 증가 기대

소득·법인세 최고구간에 대한 추가 감세가 중단됐다. 다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주로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 이 구간에 대해서만 법인

세율이 2%포인트 인하된다. 또 앞으로 기업이 투자를 하더라도 고용 증가가 없으면 세제혜택을 받기 어려워진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은 3년간 근로소득세를 면제받고,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도 2년간 사회보험료를 감면받는다. 아울러 편법적인 상속·증여를 막기 위해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며, 이와 함께 서민 생활 지원을 위해 자녀가 있는 가구는 최대 1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으며, 자녀가 없어도 배우자가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고위당정 협의와 세제발전심의 위원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공생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2011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박재완 장관이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 44차 세제발전심의위'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정치권과 재계의 관심을 모아온 법인세 추가감세 문제는 결국 과세표준 구간을 하나 더 신설하고 추가감세 내용도 담은 절충안으로 해결됐다. 즉, 과표 2억원 초과 구간을 2억~500억원 이하 및 500억원 초과 구간으로 세분하고, 중소·중견기업들이 주로 적용받는 2억~500억원 이하 구간은 예정대로 세율을 20%로 인하하기로 했으며, 반면 500억원 초과 구간은 현행 22% 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법인세와 함께 관심을 모았던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대로 35%를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투자금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임시투자 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해 세금을 지원하는 고용창

출 투자세액 공제가 도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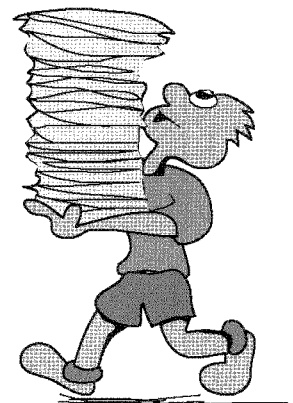
대신 새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해 전년대비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3~4%를 기본 공제하고, 고용증가인원 비례에 따라 2%를 추가 공제하기로 했다.

2013년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는 3년간 근로소득세를 면제하고,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에게는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2년간 세액 공제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등의 졸업생에 대한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를 1인당 2,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재학생의 현장실습 비용에 대해서도 연구개발(R&D)비용 수준의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서민·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혜택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지를 확대해 내년부터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더라도 배우자만 있으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총 소득기준 및 최대 지급금액도 늘어나, 기존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합계 1,700만원 미만 가정에 최대 연 12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부양자녀 수에 따라 최대 18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로 금로장려금 혜택을 받는 가구가 올해 52만 가구에서 내년엔 80여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소득 공제한도(추가 100만원) 및 소득공제율(30%)을 인상하고,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체크·선불카드 사용분 공제율을 기존의 25%에서 30%로 확대했다.

8.18 전·월세대책에서 내놨던 방안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았다. 임대주택 외 거주용 자가주택(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을 1채를 소유한 사람이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증부세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근로자도 현행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전용면적 85㎡ 이하 및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선 3년간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했다.

한편 서민 밀집 및 독과점 품목 40여개에 대한 관세율을 평균 3.9% 인하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해 석유제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0.3%를 세액 공제하기로 했다.

이밖에 회사택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제, 농어업용 면세유 및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감면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조세지원제,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일몰을 줄줄이 연장했다.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방만한 비과세 및 감면제 정비에도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일감을 받은 법인의 사업연도별 매출거래 중 특수관계 법인과 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한 경우 내년부터 증여세를 물리기로 했다.

과세대상자는 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지분을 3% 이상 보유한 대주주 개인이다.

또 체납 국세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징수업무 중 일부를 국세청이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도 현행 7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했다.



조세법칙조사의 대상자 선정에 관한 기준도 법령
화해 조세법에 대한 처벌저차를 투명하고 예측 가
능하도록 개선했다.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제조·유통·판매자 모두에
게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비영리법인의
편법적인 증여를 막기 위해 인건비 한도를 설정하
기로 했다.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과생상품이
결합된 신종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과세 근거를 신
설하고,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급하지 않는 경우 그 신고기한을 대폭 연장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납세자의 권익과 편의를 위해 개
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제도를 폐
지하고 가산세제도를 보완했다.

또 관세법령 해석에 관한 불복절차를 체계화하도
록 관세예규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해외투자기업
의 간접외국납수세액공제 범위도 조세조약 유무
에 관계 없이 100%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2015년까지 3조 5,000억
원 가량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집계했다. 근로장려
세제가 확대되면서 2,000억원 가량이 감소 요인이
지만,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소득세 최
고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약 3조원 등이 증
가 요인으로 작용해 전체적으로 세수가 증가한다
는 것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
글로벌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공생발전을 통해 선
진경제로 발돋움하기 위한 첫번째 종합대책으로

'2011 세법개정안'을 만들었다"며 "성장기반 확충
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서민·중산층을 실질
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공평
과세에 중점을 두고 조세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밝
혔다.

12. "계열사 간 일감 몰아 주기에 증여세 물린다"

거래비율 30% 초과분·지분 3% 이상 대주주에 과세

내년부터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이익을
증여로 간주, 일감을 받은 기업 대주주에게는 증여
세가 부과된다. 또 지난해 말 기준 36조원이 넘는
체납국세 중 일부를 자산관리공사가 위탁받아 징
수업무를 맡게 되며,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도 5억
원 이상 또는 1년 이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한 사람뿐만 아니라
판매자에게도 유류세가 부과되며, 장학재단을 통
한 편법적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인건비 한도가 설
정된다.

이와 함께 공제한도가 초과된 법정기부금은 5년에
걸쳐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201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공정과세 강화 방안을 내놨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대상을 놓고 영업이익이나, 주가차익이나를 고민하던 정부는 결국 영업이익에 과세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주가는 변동성이 심한 데다, 일감 몰아주기는 계속되는데 외부 환경에 의해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도 있어 제대로 된 과세를 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의 영업이익 중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된 부분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할 경우를 일감 몰아주기로 보고, 그 초과이익에 대해 과세하기로 했다. 30%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여러 조문에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기준이라는 점에서 설정한 숫자다.

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으로서 지분을 3% 이상 보유(간접출자 비율도 합산)한 사람을 과세 대상으로 삼았다.

이런 점들을 감안, 정부는 증여세 과세 대상 이익을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 법인들과의 거래비율-30%)×(주식보유비율-3%)'로 정했다.

예를 들면, A기업의 총매출액과 세후영업이익이 각각 1,000억원, 100억원이고 특수관계법인들과의 거래액이 700억원이라면, A기업 지분을 10% 보유한 지배주주 B의 과세 대상 이익은 100억원×(700

억원/1,000억원×100%-30%)×(10%-3%)=2억 8,000만원이 된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내년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 거래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으며, 주식 양도시 증여세로 과세된 부분은 이중과세 문제가 있어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36조원이 넘는 체납 국세를 민간에 위탁해 징수하도록 했다. 현재 국세 압류재산 공매를 대행하고 있는 캡코가 맡게 되며, 위탁체납액은 소액체납자에 대한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에서 국세청장이 결정할 계획이다.

또 고액체납자 공개 범위를 체납금액 5억원 이상 또는 체납기간 1년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각각 7억원 이상, 2년 이상 체납자만 명단이 공개되고 있다.

유사 석유제품을 판매·보관하는 사람도 유류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석유제품은 제조자에게 유류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으나, 유사 석유제품은 대부분 유통·판매단계에서 적발되므로 현행 '제조자 과세방식'으로는 유류세 부과·징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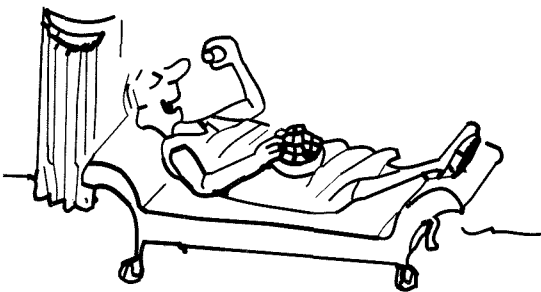
이에 따라 현행 휘발유, 경유 세율과 동일하게 유사휘발유에는 리터당 529원이, 유사경유에는 375원의 세금이 붙게 된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인건비 관리도 강화된다. 장학재단 등 비영리법인을 통한 편법적 증여를 방지하

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인건비 한도를 상
증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 설정하기로 했다. 한도
를 초과한 금액은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
으로 보고 상속·증여세나 법인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기업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도 도입된다. 퇴직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이 근로소득에 비해 상대적
으로 낮아 기업이 퇴직금을 과도하게 적립·지급
함으로써 발생하는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겠
다는 취지에서다. 현행 퇴직소득은 소득이나 근속
년수에 관계없이 40%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데,
앞으로 퇴직소득 한도를 '퇴직 전 3년간 평균 연급
여×1/10×근속연수'로 설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상대적으로 공익성이 큰 법정기부금 단
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정기부금 이월
공제 기간을 지정기부금과 동일하게 5년으로 연장
하기로 했다. 현재는 1년 밖에 이월공제가 안 된다.



13.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1/3 지원
...2,000억 규모 청년창업자금 신설"

정부의 내년도 일자리 창출 예산은 올해보다
6.8%(6,000억원) 증가한 10조1,000억원으로 책정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복지와 경제성장의 핵심
연결고리인 '일자리'를 중심으로 '일-성장-복지'
의 선순환 구조를 정립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새로
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창업 △고졸자 취업
△문화·관광·글로벌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
리 등 '4대 핵심 일자리'에 집중 투자하고, 재정지
원 직접일자리 2만명 늘리는 등 취약계층을 중
점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일하는 복지' 위해 4대 핵심 일자리 확충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청년층의 창업 활성화
를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신
설했다. 또 수요자가 창업프로그램 및 지원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개선했다.

3단계(재학중-구직중-취업중) 고졸자 취업지원
예산도 1,000억원 증액했다. 이에 따라 특성화고에
취업지원관이 단계적으로 확대 배치되고, 공공기
관의 청년인턴 중 고졸자 채용이 4%에서 20%로
늘어난다. 취업자들에게 학업을 계속할 기회를 주
기 위해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에 12억을 지원하고,
고졸 취업자를 위한 중소기업형 계약학과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영화, 음악(K-POP), 뮤지컬, 만화 등 창의적 문

화콘텐츠 분야 및 창조관광사업 예산도 467억원에서 1,002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액됐다. 글로벌 일자리 확충 및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인턴 및 해외봉사단을 확대하고, ODA 프로젝트에도 신규로 189억을 지원한다.

취업 취약계층 위한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서비스 종사자에게는 일자리를, 가족들에게는 일할 여건을 조성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16만 7,000명에서 17만 5,000명으로 확대된다. 또 청년, 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도 올해보다 2만명 늘어난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끝날 예정이었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의 영향을 감안해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정부는 또한 저임금 근로자에게 670억원 규모의 사회보험료를 신규로 지원하기로 했다. 수혜 대상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최저임금 120% 이하(2012년 기준 월 124만원 이하) 근로자 122만명이다.

이와 함께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를 2만명 늘리고, 4,050세대 및 교육소외계층의 취업역량 향상을 위한 대학 및 자치단체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에도 13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14. "대학등록금 22% 부담 경감...만 5세아 전면 무상보육"

정부가 27일 발표한 내년 나라살림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사람희망 예산'이란 점이다.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애주기별·수혜대상별 맞춤형 지원이 강화되고, 재정지원 규모도 올해보다 21% 늘어난다.

사람희망 11대 과제는 △보육 △교육 △문화 △주거·의료 등 생애주기별 4대 과제와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농어업인 △장병 및 전·의경 △국가유공자 등 7대 수혜대상별 과제로 구성됐다.

생애주기별 4대 복지서비스 확충

정부는 영유아에서 노인까지 생애주기별로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보육, 교육, 문화, 주거·의료 등 4대 부문으로 나눠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첫 단계인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이란 목표 아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 및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고,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의 본인부담금을 현재 1만 5,000원에서 5,000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보육교사 초과근무에 대해서도 월 5만원씩 근무환경 개선비를 신규로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 단계에서는 대학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득수준별 차등지원을 전제로 약 1조 5,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또 초등학교 자녀를 둔 기

초 생활보장 수급가구에 대해 교육급여(부교재비) 27억원을 신규 지원하고, 방과 후 나홀로 아동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를 8% 인상하는 한편 지원대상도 240곳 늘리기로 했다.

문화 단계의 핵심과제는 '문화예술 체험기회 확대'로 주5일 수업제를 맞는 저소득층 청소년 25만명에게 신규로 문화바우처를 제공하고, 5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토요문화학교 100개소를 신설하기로 했다.

청장년 및 노년층에게는 주거안정과 필수의료 뒷받침에 초점을 맞춰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정신보건센터 확대 및 국가차원의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신설키로 했다. 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액을 1억 4,600만원으로 확대하고 비용의 집중치료를 적기에 지원하기로 했다.

7대 취약계층 집중 지원

정부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부터 최저생계비 이하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등 근로 무능력 가구는 부양의무자가 중위소득 미만이면 모두 기초생활보호 수급자로 보호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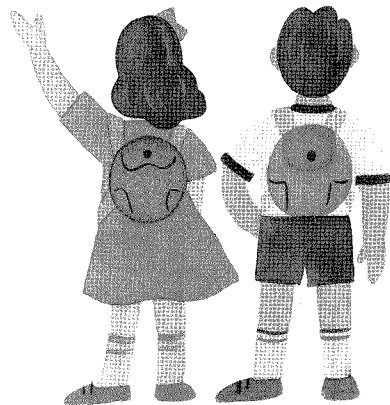
또 만 19~64세 기초생활보호 수급자 33만 4,000명에게 매 2년마다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기초생활보호 수급가구 중 소년소녀가장 및 한부모가정 3만 1,000가구에 81억원을 들여 겨울철 난방유

200리터를 지원할 방침이다.

장애인을 위해서는 도서관 사서보조 등 복지일자리 5,000개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20만원에서 26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장애아동 가정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취학 전까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인층에 대해서는 문화해설사, 자연환경지킴이 등 노인 맞춤형 일자리 2만개를 확대·보급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수혜자 수를 1만 9,000명 더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228개 지방문화원에 어르신 대상 문화학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1만여 경로당에 생활체육용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족을 위해서는 통번역 지원사를 늘려 모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배치해 결혼이민자들의 의사소통 및 서류작성 등을 지원한다.



농어업인들을 위해서는 농지연금 규모를 현재 15 억원에서 19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농어업 재해 보험 대상품목도 51개에서 60개로 늘렸다.

장병 및 전·의경들의 복무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전투부대 장려수당 및 군 당직수당을 신설하고, 부대활동 지원을 위한 주임원사활동비와 부대 운영비도 인상했다. 특히 장병휴가비를 연 4만 6,000원에서 5만 6,000원으로 올리고, 사병 기본급 식비도 하루 5,820원에서 6,008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신병훈련소의 위생여건을 개선하고 전·의 경 버스를 우등고속버스로 교체하는 한편 노후 숙영시설 개보수에도 39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강화해 내년부터는 1급 중상이자에 대한 특별수당을 100% 인상하고 희생 정도에 따른 차등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남 부권에 이어 중부권 및 제주권 국립묘지 신규 조성 에도 74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15. "SOC, 22.2조원 투자... 中企 정책자금 3.4조로 확대"

내년 4대강·여수 엑스포 사업 등이 완료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평창 동계올림픽 교통망 확충 및 호남 고속철 조기 완공 등 사회간접자본 (SOC) 투자규모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된다. 또 국 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사업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며, 기초·원천 기술투자 비중이 처음으로 50% 이상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 정책

자금은 3조 4,000억원으로 증액되고, 내년까지 허 름한 골목수퍼 1만개가 현대식 점포인 '나들가게' 로 변신한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예산안 중 총 61 조원은 경제활력 및 미래대비 부문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보다 4조 5,000억원 증액된 규모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수기반 확대

정부는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 본(SOC)과 환경부문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4 대강 사업 이외의 SOC 투자규모를 올해 21조원에서 22조 2,000억원으로 늘리고, 고속도로와 고속철 도 투자액도 2조 474억원에서 2조 7,414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4대강 사업 이외의 수질개 선 사업에도 집중 투자해 규모를 1조 2,369억원에 서 1조 3,97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2,000억원 늘리고, 내년까지 나들가게 1만개를 확충하기로 했다. 또 전통시장 활성화 방침 으로 온누리상품권 공급을 2,000억원까지 확대하 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협 구조개 편에 총 4조원의 자본금을 지원하고 한·미 자유 무역협정(FTA) 대책에 1조 8,594억원을 투자하 기로 했다.

녹색성장 및 인적자원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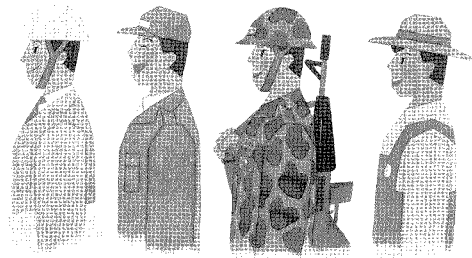
정부는 신성장동력분야 연구개발을 위해 내년부 터 기초·원천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을 처음으로 50% 이상 확대한다.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

성을 위한 지원을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 2,100억 원으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줄기세포은행 설립 등 줄기세포연구 분야에도 1,000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공공부문에 대한 전기차 보급지원 사업 규모도 800대에서 2,500대로 확대할 계획이며, 지자체 및 소속 공공기관, 전통시장, 양계장 등의 LED조명 교체를 지원하는 예산도 286억원에서 444억 원으로 늘린다.

미래를 위한 공공교육 투자에도 지원에 나서 박사 과정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 대상을 연간 3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대학 구조개혁 지원을 4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증액하고, 시간강사 처우개선 지원도 805억원에서 989억 원으로 확대한다.

정해 대북 인도적 지원 및 남북경제협력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16. '전자수입인지' 도입 추진... 수입인지 인터넷으로 구매

국민안정 및 통일대비 국방투자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재해예방과 생활안전, 국방투자에도 공을 들였다. 기상이변에 대응하는 방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5조 1,000억원을 투입하고, 기상관측 및 방재기술 향상을 위한 투자도 지속하기로 했다.

생활안전 투자도 확대해 '통합112신고시스템' 구축 예산을 올해 129억원에서 373억 원으로 확대했고, 방사능 오염 식품 통관차단 및 유통 감시에 20억 원 을 새로 배정했다.

또한 군 교육훈련 강화 및 핵심전력 보강 등 방위력 개선에 올해보다 4.6% 증가한 10조 1,350억 원을 편성했다. 다만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수준으로 배

“재정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기획재정부는 인터넷으로 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인터넷을 통한 수입인지의 발행 및 판매 △신용카드 결제 허용 △전자수입인지 업무의 위탁 근거 신설 등 전자수입인지 제도의 법적 근거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앞서 재정부는 지난 2008년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공감정책 발굴'의 일환으로 2010년 생활공감정책에 전자수입인지 도입을 제안하고 추진해 왔다.

그동안 수입인지를 구입하려면 은행이나 우체국 등 행정기관 외부의 판매처를 방문해야 하고 신용카드로는 구매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왔다.

재정부에 따르면 싱가포르, 홍콩,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전자수입인지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재정부는 이에 따라 전자수입인지의 도입을 추진해 내년 중 시스템 구축 및 시범 운영을 거쳐 2013년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전자수입인지 시스템의 유지·보수·관리 등 업무는 금융결제원에 위탁하기로 했다.

다만, 새로운 제도의 추이를 감안해 종이수입인지와 전자수입인지를 당분간 병행해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자수입인지가 도입되면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수입인지 구매가 가능해지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재정부는 "전자수입인지가 도입되면 별도의 판매처를 방문하지 않고도 행정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돼 윈스톱 서비스에 따른 국민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며 "그러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정보소외계층을 배려해 현행과 같이 은행, 우체국 등에서도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고과(02-2150-5113)

17. "신용카드 포인트로 국세 납부하세요"

앞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500만원 한도에서 나라 세금을 낼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신용카드의 사용 증가로 카드 포인트 적립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이중 일부가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하고 있어 영세납세자의 납부 편의차원에서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포인트 이용이 가능한 신용카드사는 KB국민, 비씨, 신한, 삼성, 롯데, NH농협, 씨티, 하나SK, 외환, 제주은행 등 10개사다.

포인트 사용은 지로나 현금 납부가 아닌 카드결제 시에만 쓸 수 있으며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포인트로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시스템상 여러 장의 카드 포인트를 한번에 통합해 사용할 수는 없지만 카드사별로 나눠 포인트 결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카드사별로 적립된 포인트는 7조6천억원인데 이중 6천억원(8%) 가량이 사용되지 않은 채 소멸됐다.

포인트 사용은 부가가치세를 비롯, 양도소득세 등 모든 국세 세목에 대해 적용되며 한도는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 최고액과 동일한 500만원이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세금납부에 사용하려면 국세 신용카드 납부 전용사이트인 카드로택스 (www.cardrotax.or.kr)에 접속해 신용카드별 포인트를 확인한 뒤 결제하면 포인트가 해당 금액만큼 차감된다.

신용카드 세금 납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중무휴 가능하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면 세무서 수납창구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개인납세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결과 카드 포인트 사용이 777건(2천 900만원)으로 건당 평균 포인트 사용액은 3만 8천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멸될 수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국세 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채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8.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 간소화

고용허가제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들이 앞으로는 고용변동 내역을 한 번만 신고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관할 고용센터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해 불편이 많았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통합 고용변동신고(E-9, H-2)’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계약 해지나 사업장 이탈 등 주요 고용변동 사실이 있을 경우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한 번만 신고하면 된다. 신고 내용은 자동으로 법무부와 고용부에 통보된다.

오는 12월 1일부터는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서도 같은 서비스가 제공된다. 현행법상 주요 고용변동 사항을 인지한 날로부터 15일 안에 신고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